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가합513072 판결 [지급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069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가합513072 판결

전 문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 정보통신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11. 9.

판결 선고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9,569,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 A 주식회사(대표사로서 지분율 80%, 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영대정보통신(지분율 10%) 및 주식회사 엔와이인포텍(지분율 10%)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B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78,368,000원, 공사기간을 2012. 11. 5.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비계약으로 체결되어 연도별 공사대금은 2012년에 25,000,000원, 2013년에 4,600,000,000원, 2014년에 4,453,368,000원이었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신청 및 승낙

A은 2013. 5. 25. 원고에게, A이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대 통신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41,943,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승낙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6. 25. 위 신청을 승낙하였다(이하 A과 C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하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비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다.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2년도 공사분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2012. 12.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위 2012년도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8. 및 2013. 6. 27.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공사 중 2013년도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합계 2,7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선행 공정의 미완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3. 12.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3년도 공사대금을 167,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감축된 금액만큼 2014년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축된 2013년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하였는데, A은 2013. 12.경 원고에게 2013년도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2,208,000,000원 중 감축된 2013년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선금 53,4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54,56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년 초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014년도 공사분의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A은 2014. 3.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136,932,000원, 보증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1.까지로 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A이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 2,131,200,000원 중 2,000,000,000원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고는 A으로부터 피고가 발급한 선급금보증서 외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나머지 선급금 131,200,000원(= 2,131,200,000원 - 2,000,000,000원)에 대하여 발급한 선급금보증서도 제출받았다.

3) 원고는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각 선급금보증서를 수령한 후 2014. 3. 12. A에 위 2,131,200,000원(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선급금은 2,0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A의 탈퇴 및 원도급계약의 해지

1) A은 2014. 4. 25. 원고에게,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공참여가 불가능한바,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동수급 지위 탈퇴 및 시공권 등 포기각서 등을 송부하였다.

2) 원고는 A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 A의 탈퇴에 동의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A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였다[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II) 선금지급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행이 중지되거나 사고 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A의 선금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선금금반환 요청 및 선금금보증채무 이행청구

1) 원고는 2014. 4. 29. 및 2014. 5. 26. A에게 위 선금금 2,131,2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선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선금금보증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16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14년도 공사분에 관한 위 선금금 2,131,2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증채무자인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및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II)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정산한 피고의 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금으로 2,019,569,419원[= 총 선금금 정산액 2,152,053,172원(= 총 선금금 2,131,200,000원 - 미지급 기성금 15,661,600원 + 약정이자 36,514,772원) × (피고의 보증 부분 2,000,000,000원 ÷ 총 선금금 2,13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면책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2호는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A의 불법 하도급과 공사수행 능력 및 의사 결여를 간과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는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2) 보증서 수령일 이전 계약 해제사유 발생으로 인한 면책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4호는 "보증서 수령일 이전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의 제한 사유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C에 재하도급 하였고, C은 주식회사 해진테크(이하 '해진테크'라 한다)에 그 대부분을 다시 재하도급하였다. 또한 A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전 파산한 상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A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명백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3) 보증사고 발생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이 2014. 4. 25.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원고는 약 2달 뒤인 2014. 6.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4) 예비적 공제 주장 설령 피고의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건비 합계 181,415,000원, 외주비 합계 889,520,000원, 자재 및 설치비 합계 65,934,991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53,600,000원을 공제한 983,269,991원은 보증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2, 4호 및 제7조에 의한 3가지 면책사유를 주장한다. 피고의 면책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계약보증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면책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보증서 수령일 이전 계약 해제사유 발생한 때(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 7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 ② A과 C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2. 11.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은 A이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작업 인력을 C의 책임 하에 지원(투입)하여 이를 완성하고, A은 이에 대하여 약정된 대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작업인력지원 및 관련업무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③ 이 사건 협력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투입인력)

- ① C은 A의 공정별 작업인력 투입계획 및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지시된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② C은 C의 인력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A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 ① C이 인력을 지원한 작업에 대하여는 C의 책임으로 약정된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④ C은 업무추진(원고, 유관기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현장대리인)

① C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A에게 통지한다.

제6조(공사용 자재의 조달 및 관리)

② C은 A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용 자재를 원고의 규격서에 따라 조달하며, 원고(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

① A이 원고와 공사단위별로 정산한 도급공사비에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82.62%를 C에게 지급한다. 단, 첨부한 장비계약금액은 향후 장비의 구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80%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3조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C은 A에게 공사이행보증금 3억 원을 예치한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82.62%)에 포함되어 있고 전액 환불하며, 환불방식은 현장 실행진도에 따라 기성지급 시 지급한다.

제4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장비선정은 이 사건 공사 수주업체들이 공동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의 구매 방침에 따르며 C이 임의로 장비 선정 및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계약금액 중 일부를 C이 정식 하도급을 요청 시에는 A은 원고와 협의하여 정식 하도급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정식 하도급 추진 시 선급금, 기성금 등의 지급은 원고가 C에 직접 지급이 아닌 A을 통해서 C에 지급한다.

④ 이처럼 이 사건 협력 계약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력 투입, 작업 관리, 현장대리인의 선임 등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C은 이 사건 협력 계약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총 공사대금의 82.62%)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C은 위 계약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처인 원고에게 '정식 하도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실제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약 30%를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하고 C을 하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승낙받았다).

⑤ C은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C과 해진테크 간의 공사시행 계약서 및 피고가 발급한 계약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공사시행 계약서에는, C이 2012. 11. 21. 해진테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160,0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보증서에는 피고가 2012. 11. 29. 해진테크의 이 사건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616,000,000원, 보증채권자를 C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0호증).

⑥ A의 대표이사이던 G는 2014. 3. 11. H에게 A의 경영권을 150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G가 H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채무가 79억 원, A의 부채가 70억 원에 이르렀고, H은 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G에게 매각대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상 A의 당기순이익은 3억 원 정도였으나, 이조차도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의 서류였다[을 제11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66, 2015고합149(병합) 판결 참조].

⑦ G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수년 전부터 저가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고, 그마저도 제때 수금하지 못하는 등으로 A의 손실이 누적되었으며, 부채를 줄이고자 사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확대되어 2011년 이후에는 A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위 판결 참조). A은 2012년경부터 자금난을 겪어 2014. 4. 부도 시까지 직원들 급여 및 현장 노임의 지급을 수시로 지체하였고, A의 자금 사정은 동종 업계에 소문이 난 상태였다(A의 총무팀장이었던 증인 E의 증언).

⑧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증인 D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무렵 해진테크의 직원이었으나, A의 직원으로 옮겨서 A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D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직원들 전원은 A의 직원이 아니었으나 A으로 임시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였고, 공공연히 자신들의 실제 소속을 거론하고 다녔다(증인 D의 증언).

다.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B 신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 무렵 시행되던 구 정보통신공사법(2014. 5. 28. 법률 제126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의 기초사실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력 계약에서 정한 C의 업무 범위 및 대금 산정 방법과 대금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C이 해진테크에게 재하도급한 정황을 종합하면, A은 위 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C에게 사실상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인 점(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2012. 11. 2.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A의 신용상태 및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후 A에 20억 원을 넘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전에는 A의 신용상태 및 시공능력을 조사하지 않은 점, ④ A의 경영상태 악화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이 알려진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A 소속이 아닌 직원이 A 소속으로 위장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선임한 감리원 및 원고 측 직원 등은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은 2014. 3. 12.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불과 약 40일 뒤인 2014. 4. 25.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선급금보증서를 수령한 2014. 3. 11.경 이전에 이미 법령 위반의 하도급 및 자금 사정의 악화와 시공 의지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A이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계약 해제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선급금보증책임이 면책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협력 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 65% 내지 70%를 차지하는 장비 관련 공사는 C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하도급비율은 50% 이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력 계약의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단서에 "장비계약금액은 장비의 구매가격이 80%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수조건 제4조에 "장비선정은 이 사건 공사 수주업체들이 공동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이 2013. 3. 27. 한일통신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광영상전송장치 등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A의 위임에 의하여 공사용 자재를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위 일반조건 제6조 제2항), ② A은 C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총공사대금의 82.62%)을 지급하되, 장비계약금액에 대하여만 그 증감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는 장비계약금액이 예정과 달리 변동할 경우 A과 C 간에 그 변동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특수조건 제4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장비 선정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C은 A의 위임을 받아 장비를 선정할 수 있는 점, ④ 위 2013. 3. 27.자 물품납품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발주처인 원고에 의해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C이 그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 계약이 장비 관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하도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4조 제4호는 실제로 해당 해제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면책사유로 주장하는 계약 해제사유와 실제 보증사고의

원인이 되는 계약 해제사유가 동일한 경우 피고는 면책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A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A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는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해지되어 이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면책사유로 주장하는 사유와 실제 보증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들과 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그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법령 위반의 하도급 및 수급인의 시공 능력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의무는 보증인인 피고보다 도급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보증금 지급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도우람

판사신아름